

# 감사결과 처분요구 등 조치결과

(2026년 3월 31일 현재)

## 1. 총괄

(단위: 건)

구분	처분요구	조치완료	조치중	비고(금회완료)
계	14 / 훈계(4)	13 / 훈계(4)	1	
기관경고	1	1		
주의 / 훈계	4 / 훈계(4)	4 / 훈계(4)		
시정(금액)	1		1	
시정(기타)	2	2		
통보	3	3		
권고	1	1		
개선	2	2		

## 2. 처분요구내역별 및 조치결과

일련번호	제목	처분요구	처분요구내용	조치결과	완결여부	증빙번호
1	금전출납 회계처리 내부통제 필요 등 관련 개선	기관경고 통보	센터 회계사고와 관련, 회계사고 방지를 위한 인편 방식의 금전출납 절차 개선 등 내부 통제 강화 방안 마련	-회령 사고 관련 재발방지대책 수립 : 2024.10.4. -제주은행 보유 계좌 입출금 알림(SMS) 신청 : 2024.11.1. -부설조직운영규칙에 센터 월말 결산 보고 근거 마련 : 2024.12.1. -제주은행 CMS 구축 협의 완료 : 2025.1.2. -제주은행 CMS 전산 개발 및 시스템 구축 : 3월	완결	

일련 번호	제 목	처분 요구	처분요구내용	조치결과	완결 여부	증빙 번호
2	연구보고서 관 미공개 및 리 소홀 등	시정 주의	미 게시된 연구 보고서 홈페이지 공개 및 통합정보 시스템 등록, 연구 보고서 발간 전 표절 검사 결과 확인서 제출 철저	-미게시 보고서 69건 중 53건 홈페이지 게시 완료. 그 외 16건은 대외주의 보고서 결재 득하여 홈페이지 게시 불가 처리 : 2025.2.18 -연구보고서 통합정보시스템 등록 관리 계획(안) 내부 결재 득하여 연구자 공지 및 등록 : 2025.2.12. -연구과제 관리지침 개정 (2025.2.17.)으로 표절검사 결과 확인서 제출 시기를 명확히 지정 및 추후 관리 철저	완결	
3	공사계약 업무 처리 부적정	주의 훈계 (2)	공사계약을 용역 계약 방식으로 계약 체결하는 일이 없 도록 하고 하자 보수보증금 징수 및 하자검사 업무 등 계약 업무 철저	-공사 담당자가 하자검사 업 무를 누락하는 일이 없도록 하자검사 실시 시기 및 관련 근거 공지 : 2025.2.11. -관련자 2명 훈계 처분 : 2025.1.20	완결	
4	협상에 의한 계약 업무 처리 부적정	시정 주의 훈계 (2)	제안서평가위원회 평가위원 명단과 평가위원별 세부 평가 점수 공개, 협상에 의한 계약 업무 처리 철저	-제안서평가위원회 평가위원 명단과 평가위원별 세부 평가 점수 홈페이지 공개 : 2025.2.10. -향후 유사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계약관련 행정규칙 등 전직원 공지 : 2025.1.21. -관련자 2명 훈계 처분 : 2025.1.20	완결	
5	각종 위원회 회의참석수당 집행 부적정	권고	위원회 회의참석 수당 지급 철저 및 제수당지급규칙 개정	-제수당지급규칙에 도 소속 공무원 회의참석수당 지급 제외 근거 마련 : 2024.8.27. -제수당지급규칙에 서면회의 참석수당 지급 근거 마련 : 2025.2.21	완결	
		시정	각종 위원회 회의 참석수당 6,000천원 회수	-위원회 참석수당 6,000천원 회수 추진 (일부 회수 완료)	추진중	

일련 번호	제 목	처분 요구	처분요구내용	조치결과	완결 여부	증빙 번호
6	부 설 센터 계약직 직원 성과급 지급 부적정	주의 통보	연구원 규정에 따라 경영평가 결과를 고려한 센터 성과급 지급 방안 검토, 센터별 예산 사정에 따라 자의적인 지급 기준으로 성과급이 지급되지 않도록 기준 마련	-부설조직운영규칙에 센터 성 과급 지급 기준 별도 마련 : 2025.2.21 -센터 성과급 지급기준 알림 문서 시행 : 2025.2.21	완결	
10	인 사 위 원 회 외부위원 자격 요건 규정 미비	통보	인사위원회 외부 위원 자격요건 마련	-인사관리규정에 인사위원회 자격요건 마련 · 인사관리규정 개정안 이사회 의결(2025.3.28.) 및 도 승인 (2025.3.31.)	완결	
11	채용 관련 자체 규칙 및 지침 등 내용 불합리	개선	공개적으로 과제 위촉직을 채용하 도록 「과제위촉직 운영지침」 개정	-과제위촉직운영지침에 공개 채용 근거 마련 : 2025.2.21	완결	
12	소속 직원 징계 기준 등 정비 미흡	개선	「지방공무원법」에 따라 성폭력·성매매· 성희롱 등 성비위 사건의 징계 시효를 3년에서 10년으로 개정	-인사관리규정에 성비위 징계 시효(3년→10년) 개정 · 인사관리규정 개정안 이사회 의결(2025.3.28.) 및 도 승인 (2025.3.31.)	완결	
			「지방공무원 징계 규칙」에 따라 현 행 음주운전 징계기 준 개정	-징계양정기준에 관한규칙에 「지방공무원 징계규칙」의 징계 양정기준 및 음주운전 징계 기준 개정 반영 : 2025.2.21	완결	